

< 양면시장의 플랫폼 이해를 바탕으로 新공정거래법 제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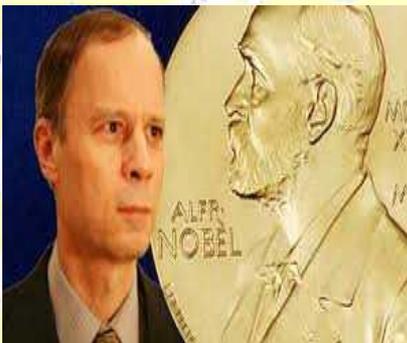
「공정거래와 정부규제」 과 「산업조직론」 강의피어링
경제학과 홍종현 201321591 홍성기 교수님 지도



목적: 1990년에 제정된 現공정거래법은 단면시장에 기초한 경쟁법으로 시장지배력의 남용과 경제력 집중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독점을 유발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시장의 필수 성립조건인 양면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양면시장의 매커니즘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이 아닌 '중립성' 위반이 규제기준이 되는 新공정거래법을 제언(提言)한다.



「공정거래와 정부규제」: 2017년 1학기에 수강한 과목으로 現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오로지 시장의 경쟁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아담스미스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 독점기업이 아닌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만 가격이 하락하고 상품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장의 구조가 다른 양면시장에선 경쟁이 아닌 독점으로 시장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산업조직론」: 2017년 2학기에 수강한 과목으로 양면시장의 성립조건과 작동 매커니즘을 배웠다. 그 중에서 비대칭 가격구조에 따른 교차 네트워크 효과로 자연독점이 現공정거래법의 핵심인 반독점, 경쟁제한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좌측의 사진은 산업조직론의 선구자이자 201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장 티롤이다.)



결론: 2017년 6월 EU는 양면시장의 플랫폼인 Google에게 검색 지배력 악용을 근거로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에 미국의 FTC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상반된 판결의 이유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중립성'이라는 새로운 규제 기준을 제시한다.